#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양성평등기본법」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,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"여성관련 법령"이란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 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.
- 2. "여성친화도시"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,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.
- 3. "성별영향평가"란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라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성평등"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, 활동의 배분,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"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- 가. 도시기반시설: 도로 및 교통, 공원 및 녹지, 산업단지 등
  - 나. 공공이용시설: 학교·공공청사·문화시설·도서관·사회복지시설 등
- 다. 주거단지 등: 공동주택단지, 산업단지, 공동체 프로그램, 마을 만들기 등 제3조(적용 범위) ① 이 조례는 광명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.

- ②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- 제4조(시장과 주민의 책무)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, 주민, 관련단체, 전문가,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주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, 실시 및 평가

- 제5조(계획수립 등)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조성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추진한다.
  -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  - 2.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
  - 3. 주요 정책과제
  - 4. 사업별 추진계획
  - 5. 연차별 추진계획
  - 6.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
  - 7.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
- 제6조(계획의 실시 등)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  -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7조(추진실적의 평가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.
- 제8조(포상 등)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, 공무원, 단체 등

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

- 제9조(조성 기준의 설정)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
  - 2. 여성의 경제 · 사회적 평등 실현
  - 3. 가족친화적 화경조성
  - 4.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
  - 5. 여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
  - 6.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
- 제10조(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)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·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여성친화 전담팀 설치)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.
- 제12조(성별분리통계 작성)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 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) ① 시장은 제정·개정을 추진하는 조례·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 및 분석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.

- 제14조(도시기반시설) ①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1. 도시기반시설
    - 가.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 · 노인 · 아동 등 보행 편의
    - 나. 안전성 · 접근성 · 편리성 ·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
    - 다. 일 · 가정 양립 환경 조성
    - 라. 여성 ·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
  - 2. 공공이용시설
    - 가.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
    - 나.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
    - 다.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
  - 3. 주거단지
    - 가.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
    - 나.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
- 제15조(여성·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)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아동 · 여성 안전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
  - 2.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
- 제16조(여성능력개발 효율화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.
  - 1.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
  - 2.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
  - 3.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
  - 4.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
- 제17조(여성의 취업·창업 활성화)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18조(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)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, 가족 친화 정책·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 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) 시장은 주민이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여성건강증진) 시장은 여성의 보건위생 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이를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.
- 제21조(지역특화 사업 추진)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. 12. 23〉
  - ② 시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제4장 여성위원회 〈개정 2021. 12. 23〉

- 제22조(설치 및 기능)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제안·자문·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여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〈개정 2021, 12, 23〉
  - 1.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
  - 2.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 - 3.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  - 4.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 제안·발굴에 관한 사항
  - 5. 제안 및 발굴 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
- 제2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

-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21, 12, 23〉
-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〈개정 2021. 12. 23〉
-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〈개정 2021. 12. 23〉
- 1.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- 2.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민간 전문가, 연구원, 대학교수, 시민대표 등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여성
- 3. 여성기업인·전문직 여성·직장여성·전업주부·영유아 돌봄여성·취약계 층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
- 4. 그 밖에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 〈개정 2021. 12. 23〉
- 제24조(임기)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2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
  - 2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
  - 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2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. 〈개정 2021. 12. 23〉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〈개정 2021. 12. 23〉
- 제27조(회의)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
- 제28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. 12. 23〉
- 제2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. 12. 23〉

## 제5장 여성친화도시 여성참여단 구성 및 운영

〈개정 2021. 12. 23〉

- 제30조(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여성친화도시 여성참여단(이하 "여성참여단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. 12. 23〉
- 제31조(구성 및 임기) ① 여성참여단 구성은 30명 이내로 한다. 〈개정 2021. 12. 23〉
  - ② 여성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1, 12, 23>
- 제32조(해촉) 여성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, 12, 23〉
- 제33조(기능) 여성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. 12. 23〉
  - 1.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
  - 2.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 사항 발굴
  - 3.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
  - 4.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
- 제34조(활동 지원) 시장은 여성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. 12. 23〉

####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부칙〈2020. 9. 29 조례 제2680호 전부개정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1. 12. 23 조례 제281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